

건 축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2. 12. .

국 토 교 통 부
(건 축 정 책 과)

법 제 처 심 사 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 가. 신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 나.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면적(직전 5개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에 대하여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이 개정(2022. 6. 10. 개정,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인력 중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를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수가 적어 시·군·구에서 필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자체별 기술사 인력 현황과 업무 전문성 차이 등을 고려

하여 필수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다양화하고자 함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하여 국민 불편 해소

2. 주요내용

- 가.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
치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안 제41조제1항, 별지 제30호 및 제30호
의3서식 개정)
- 나.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2항 신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및 제8호의2서식 신설)
- 다.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
치 의무대상 구체화 (안 제43조의2제8항)
-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필수 전문인력을 확대 (안 제
43조의2제5항)
-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함 (안 제38조의4 및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의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추가로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입면도·단면도·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 란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면도·단면도·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	------	------	------	----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m²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m ²	연면적 합계	m ²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입면도·단면도·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행랑,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휴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건축주)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① 공사명						
② 대지위치						
③ 용도 및 구조	용도			구조		
④ 규모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상층수	
⑤ 피난시설	확인내용		관련규정		적합여부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소방관진입창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⑥ 그 밖의 사항						
⑦ 종합의견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건축사 주 소: 연락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8조의4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를 “별지 제27호의4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높이”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로, “공작물인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높이”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로, “공작물인 경우”를 “경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축조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별지 제30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항 목	내 용	확 인
1. 공작물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작물의 종류 : 공작물의 구조 : 공작물의 높이 : ()m, 길이()m	
2.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조계산 및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3. 공작물의 전반적인 구조 안전 확인		
가. 적합한 자재의 사용 여부	구조도와 동일한 구조부재 및 앵커볼트 등을 사용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나. 공작물 흔들림	앵커볼트 및 지지부의 흔들림을 포함해 공작물 전체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다. 위험시설물 주위설치 여부	주위에 위험시설물 등이 없는 안전에 적합한 위치인가? (전선 등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망 등)	적합(), 부적합()
라. 공작물 기울어짐	공작물의 기울어짐이 1/150 이내이거나 맨눈으로 기울어짐이 인지되지 않는가?	적합(), 부적합()
마. 안전점검 용이성	정기적인 공작물의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접근이 용이하고, 점검구 등을 확보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4. 지지구조물 확인		
가. 지지구조물의 배수 용이성	공작물의 지지구조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가 용이하게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나. 지지구조물의 상태 평가	콘크리트 등 지지구조물이 균열이 없고, 공작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다. 앵커볼트 설치 상태	앵커볼트의 개수와 크기 등이 구조도에 표시된 것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5. 공작물의 주요 구조부재 확인		
가. 부식방지처리	부식이 발생하는 재료인 경우 아연도금 등의 도금 또는 방청(녹 방지) 도장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나. 볼트접합부 확인 (해당 시 확인)	구조부재간 볼트접합부가 구조도대로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다. 용접접합부 확인 (해당 시 확인)	구조부재간 용접접합부가 구조도대로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라. 판재 및 마감재 확인	구조부재에 접합된 판재 및 마감재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제43조의2제5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1. 제4항제1호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허가 면적 :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에 한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2. 노후건축물 비율 :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 및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신설>	제13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의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수하였음을 확인 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른 가 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추가로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입면도·단면 도·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서 3.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 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② ~ ⑦ (생략)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 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 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

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 ·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영 제107조의2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의4서식에 따른다.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용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2. (생략)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 경우---

4.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부한다)

② ~ ④ (생략)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신설>

⑥ (생략)

<신설>

<신설>

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단서 삭제>

1. 제4항제1호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u>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u>1. 건축허가 면적 :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에 한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u> <u>2. 노후건축물 비율 :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u> ⑨ ----- 제8항----- ----- ----- ----- -----.
---	--

(붙임 1)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m²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m²	연면적 합계 m²
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m²)	연면적(m²)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휴면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붙임 2)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00. 0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m²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m²	연면적 합계 m²
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m²)	연면적(m²)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입면도·단면도·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휴면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건축주)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붙임 3)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3. 00. 00.>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① 공사명						
② 대지위치						
③ 용도 및 구조	용도			구조		
④ 규모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상층수	
⑤ 피난시설	확인내용		관련규정		적합여부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소방관진입창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⑥ 그 밖의 사항					
⑦ 종합의견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건축사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1.>

※ 어두운 난()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2023. 00. 00.>

※ 어두운 난()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1. 동의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이 동의는 유효합니다.
2. 동의대상 토지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3.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사·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붙임 6)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축조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붙임 7)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3. 00. 0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축조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 풍설계 확인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붙임 8)

[별지 제30호의3서식] <개정 2021. 12. 31.>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항 목	내 용	확 인
1. 공작물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작물의 종류 : 공작물의 구조 : 공작물의 높이 : ()m, 길이()m	
2.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조계산 및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3. 공작물의 전반적인 구조 안전 확인		
가. 적합한 자재의 사용 여부	구조도와 동일한 구조부재 및 앵커볼트 등을 사용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나. 공작물 흔들림	앵커볼트 및 지지부의 흔들림을 포함해 공작물 전체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다. 위험시설물 주위설치 여부	주위에 위험시설물 등이 없는 안전에 적합한 위치인가? (전선 등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망 등)	적합(), 부적합()
라. 공작물 기울어짐	공작물의 기울어짐이 1/150 이내이거나 맨눈으로 기울어짐이 인지되지 않는가?	적합(), 부적합()
마. 안전점검 용이성	정기적인 공작물의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접근이 용이하고, 점검구 등을 확보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4. 지지구조물 확인		
가. 지지구조물의 배수 용이성	공작물의 지지구조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가 용이하게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나. 지지구조물의 상태 평가	콘크리트 등 지지구조물이 균열이 없고, 공작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다. 앵커볼트 설치 상태	앵커볼트의 개수와 크기 등이 구조도에 표시된 것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5. 공작물의 주요 구조부재 확인		
가. 부식방지처리	부식이 발생하는 재료인 경우 아연도금 등의 도금 또는 방청(녹 방지) 도장이 적합하게 처리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나. 볼트접합부 확인 (해당 시 확인)	구조부재간 볼트접합부가 구조도대로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다. 용접접합부 확인 (해당 시 확인)	구조부재간 용접접합부가 구조도대로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라. 판재 및 마감재 확인	구조부재에 접합된 판재 및 마감재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붙임 9)

[별지 제30호의3서식] <개정 2023. 00. 00.>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항 목	내 용	확 인
1. 공작물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작물의 종류 : 공작물의 구조 : 공작물의 높이 : ()m, 길이()m	
2.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외의 공작물로서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조계산 및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3. 공작물의 전반적인 구조 안전 확인		
가. 적합한 자재의 사용 여부	구조도와 동일한 구조부재 및 앵커볼트 등을 사용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나. 공작물 흔들림	앵커볼트 및 지지부의 흔들림을 포함해 공작물 전체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다. 위험시설물 주위설치 여부	주위에 위험시설물 등이 없는 안전에 적합한 위치인가? (전선 등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망 등)	적합(), 부적합()
라. 공작물 기울어짐	공작물의 기울어짐이 1/150 이내이거나 맨눈으로 기울어짐이 인지되지 않는가?	적합(), 부적합()
마. 안전점검 용이성	정기적인 공작물의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접근이 용이하고, 점검구 등을 확보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4. 지지구조물 확인		
가. 지지구조물의 배수 용이성	공작물의 지지구조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가 용이하게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나. 지지구조물의 상태 평가	콘크리트 등 지지구조물이 균열이 없고, 공작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다. 앵커볼트 설치 상태	앵커볼트의 개수와 크기 등이 구조도에 표시된 것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5. 공작물의 주요 구조부재 확인		
가. 부식방지처리	부식이 발생하는 재료인 경우 아연도금 등의 도금 또는 방청(녹 방지) 도장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나. 볼트접합부 확인 (해당 시 확인)	구조부재간 볼트접합부가 구조도대로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다. 용접접합부 확인 (해당 시 확인)	구조부재간 용접접합부가 구조도대로 시공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라. 판재 및 마감재 확인	구조부재에 접합된 판재 및 마감재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적합(), 부적합()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989